

보 고 안 건

연번	유형	안 건 명	제안부서
1	정관변경	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	공공보건 의료재단

공공보건의료재단

1.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보고

□ 보고근거

-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정관)제3항

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5. 16.>

□ 개정내용

- 정관 제22조(조직 및 정원)에 명시된 정원표(별표2) 개정

– '21년 인력증원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라 “현행 38명에서 45명으로 개정”

(현행) 대표이사, 연구직 30명, 일반직 7명 → (개정) 대표이사, 연구직 36명, 일반직 8명
* 신규증원(연구직 6명) : 2급(1명), 3급(1명), 4급(2명), 5급(1명) / 공무직 일반직 전환(1명) : 5급(1명)

– '21년 직원 승진연한 도래에 따른 정원표 내 직급 간 정원 개정

인사규정 제21조(승진 소요기간)에 따른 승진 대상 직원(3-5급)의 직급별 인원에 대한 조정
* 직급별 승진 대상자 인원(총괄) : 3급 → 2급(4명), 4급 → 3급(5명), 5급 → 4급(4명)
– 연구직 : 3급 → 2급(승진연한 4년, 3명), 4급 → 3급(승진연한 4년, 4명), 5급 → 4급(승진연한 3년, 3명)
– 일반직 : 3급 → 2급(승진연한 4년, 1명), 4급 → 3급(승진연한 4년, 1명), 5급 → 4급(승진연한 3년, 1명)

□ 향후계획(안)

- 시의회(보건복지위원회) 정관 개정(안) 사전 보고 : '20.12월
- 이사회 정관 개정(안) 의결 및 서울시장 승인 : '20.12월
- 보건복지부 허가 및 개정(안) 시행 : '21.1월

작성자 기획조정실장(직무대행): 이상윤 (☎ 2126-4703) 담당: 강수민(☎ 4733)

붙임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정관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	개 정 안							
별표2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								별표2.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							
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	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	5급
계	38	1	4	5	8	9	11	계	<u>45</u>	1	4	<u>10</u>	<u>10</u>	<u>12</u>	<u>8</u>
임원	1	1	-	-	-	-	-	임원	1	1	-	-	-	-	-
일반직	7	-	1	1	1	2	2	일반직	<u>8</u>	-	1	<u>2</u>	1	2	2
연구직	30	-	3	4	7	7	9	연구직	<u>36</u>	-	3	<u>8</u>	<u>9</u>	<u>10</u>	<u>6</u>